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 및 제1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포상금 지급기준) ①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가다 각 호와 같다.

- 1. 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: 30만원 이하
- 2.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: 20만원 이하
- 3. 법 제20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: 30만원 이하
- 4.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: 50만원 이하

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, 지급금액,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3조의3(신고자의 비밀보장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4조제1항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4의2.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

제15조에 제7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7.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
- 8.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
- 9.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
- 10.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

별표 1 제1호다목 중 “2억 원을”을 “10억 원을”로, “2억 원으로”를 “10억 원으로”로 한다.

별표 2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(단위: 만원)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이상 위반
가.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위생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3항제1호	30	60	90
나. 법 제18조에 따라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2항	3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액		
다.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기한 내에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1항제1호	300	400	500
라. 법 제26조제1항을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	법 제46조제3항제2호	30	60	90
마.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46조제1항제2호	200	300	400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신설>	제13조의2(포상금 지급기준) ① <u>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 1. <u>법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: 30만원 이하</u> 2. <u>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: 20만원 이하</u> 3. <u>법 제20조제1항·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한 경우: 30만원 이하</u> 4. <u>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자를 신고한 경우: 50만원 이하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, 지급금액,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<신설>	제13조의3(신고자의 비밀보장) ① <u>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라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등 그 신분이 누설되지 아니하</u>

	<u>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 그 경위를 확인하여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한 자에 대하여 징계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u>
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14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4. (생략)	1. ~ 1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14의2.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</u>
15.·16. (생략)	15.·16. (현행과 같음)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식품의약품안전처장(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	제15조(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1. ~ 6. (생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7.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</u>
<u><신 설></u>	<u>8.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</u>
<u><신 설></u>	<u>9. 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·징수에 관한 사무</u>
<u><신 설></u>	<u>10. 법 제3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수입식품정책과	
연 락 처	043-719-2162